

전자어음할인 인터넷 신청제도 시행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2011. 5. 1.부터 종합건설사(외부감사대상법인)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전자어음을 조합에서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 온라인 지점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 할인 인터넷 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사(외부감사대상법인)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따라 2009. 11. 9.부터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되어 그간 조합원사가 전자어음을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우리 조합명의로 어음을 배서한 후 지점을 방문하여 어음할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고자 금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사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전자어음을 우리 조합 명의로 배서한 후 조합 인터넷 온라인지점을 이용하여 어음할인 신청을 하면 지점

에서는 할인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어음할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어음이 아닌 일반어음(종이어음)은 현행대로 조합원사가 어음을 소지하고 직접 지점을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음할인 대상 종합건설사 및 조합원사의 어음할인 한도 등은 사전에 거래 지점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선급금으로 수령한 전자어음은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전자어음 할인 인터넷 신청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전자어음 할인을 위해 지점을 내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조합원사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고액보증 심사제도 시행안내

(2011. 4. 1. 시행)

- 보증심사부

◆ 근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대형공사의 보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보증지급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져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전 조합원의 출자자산에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저가수주등 부실보증 인수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고액보증 심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심사서류 구비 및 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보증서 발급이 일정기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전 조합원의 자산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보증기관으로서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유지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보증을 지원하고, 효율적 경영활동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사에 환원하는 등 조합원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조합원사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I. 시행 배경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대형 공사의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 조합원의 출자자산에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감안, 고액보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보증 손실을 감소하고자 고액보증 심사제도 도입과 아울러 본부에 보증심사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심사부에서는 고액보증 및 저가수주 공사에 대한 보증심사를 전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게 됩니다.

II. 시행 방안

1. 심사대상 (계약보증만 대상)

가. 대상 : 계약금액 50억원 초과 및 보증금액 5억원 초과하는 민간공사(공공 하도급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예정가격과 입찰참여자의 평균 입찰금액 대비 90% 미만 낙찰공사
- 예정가격과 입찰참여자의 투찰금액 파악이 불가능한 공사

※ 평균입찰금액 : 입찰참여자가 2인 이상 입찰금액 평균 산출(낙찰가제외)

나. 심사제외 대상

- 수의계약공사
- 선급금보증

다. 사례

1) 심사대상

- 계약금액 110억원, 보증금액 5억5천만원 (5%) 보증신청한 경우
- 계약금액 51억원, 보증금액 5억1천만원 (10%) 보증신청한 경우

2) 심사제외

- 계약금액이 40억원, 보증금액 6억원(15%)을 보증신청한 경우

<예시> -계약금액 기준-

예정가격 대비	평균입찰 금액 대비	심사대상 여부	비고
파악 불가	90% 미만	심사 대상	※ 두 경우중 하나가 90%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임
90% 미만	90% 이상		
90% 이상	90% 미만		
90% 미만	파악 불가		
파악 불가	파악 불가	심사 제외	지점 자체발급
90% 이상	90% 이상		
파악 불가	90% 이상		
90% 이상	파악 불가		

※ 동일 공사에 대하여는 중복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심사절차

1) 조합원이 거래지점에 보증신청

- 제출서류
- ① 예정가격
- ② 입찰참여자 투찰금액 및 명단

③ 계약서, 계약조건 (설계변경, 물가상승 관련 조항)

④ 공사내역서(공종별)(엑셀등 pc파일로 제출)

⑤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이크레더블 발행)

2) 지점에서 입찰참여자의 평균입찰금액 대비 90%이상이면 보증서를 발급하므로 입찰참여자의 투찰금액이 반드시 필요

※ 제공된 투찰금액은 기밀사항으로 조합에서 철저히 기밀유지

3) 또한 예정가격 및 평균입찰금액이 90% 미만인 경우 지점은 당일 본부심사를 의뢰

※ 고액보증 심사대상 인터넷보증 신청시 준비서류 등 팝업창으로 안내

4) 본부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거래지점에 통보
- 처리기간 : 보증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 단, 심사가 몰릴 경우 지연될 수 있음

5) 지점은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담보 징구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후 보증서 발급

3. 심사항목 및 내용

○ 저가위주 심사 (신용평가 60점, 수행평가 40점)

1) 신용평가 (60점)

- 외부신용평가 기관인 “이크레더블” 등급 적용
- “이크레더블”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조합 신용평가 등급 반영

2) 수행평가 (40점)

- 시공능력 평가 : 10점
- 계약조건 : 10점
- 자재비 적정성 : 10점
- 노무비 적정성 : 10점

※ 내역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자재비, 노무비)
최저점수(0점) 부여

4. 보증인수 조건 (붙임 2 참조)

- 조합원 입보, 자연인 입보 또는 물적 담보 중 선택 가능
 - 조합원 또는 자연인 입보의 경우 보증채무이행 각서(붙임3) 제출
 - ▶ 심사등급에 따른 보증인수 조건
 - 조합원 : 지분액 한도로 입보(지분액 5억원이하는 5억원 한도)
 - 자연인 : 1인당 3억원 한도로 입보(재산세 납세 실적 10만원 이상,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임직원 등)

※ 입보한도 부족시 보증인 추가 가능

심사 등급	산 출 점 수	보증인수조건(선택)	
		물적 담보	인적 담보
1	85점 이상	면 제	면 제
2	85점 미만 ~ 75점 이상	보증금액의 10%	조합원 1인 이상 또는 자연인 1인 이상
3	75점 미만 ~ 60점 이상	보증금액의 20%	
4	60점 미만 ~ 50점 이상	보증금액의 30%	
5	50점 미만	보증금액의 40%	

5. 담보종류

가. 물적담보의 종류 및 한도

- 1) 예·적금 증서, 부동산, 상장주식, 국·공채, 보증사채, 공사대확정채권
- 2) 시공능력 210억 이상인 건설업체 등이 공사 대가로 발행한 진성어음

- ※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제한됨
 - 건설자재대금의 전도를 위하여 수령한 진성어음
 - 타 공사의 선급금으로 수령한 진성어음

나. 인적담보의 종류

- 1) 조합원 : 지분액 한도로 입보(지분액 5억원이하는 5억원 한도)
- 2) 자연인 : 1인당 3억원 한도로 입보(재산세 납세 실적 10만원 이상,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임직원 등)

6. 협조사항

- 예정가격, 입찰 참여자 명단, 공사내역서(엑셀 등 pc화일)
 - ⇒ 고액보증 심사업무 신속처리를 위하여 필요

- 입찰참여 조합원사는 투찰가격 신속 제공
 - ⇒ 평균입찰금액 산출을 위하여 필요
 - 각 조합원사가 보증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점에서 입찰가격 문의시 신속 정확한 협조 필요
 - 입찰가격은 전화로 파악하고 수신자 확인
 - ⇒ 가급적 문서로 확인, 신속파악을 위한 전화확인 병행
 - ※ 조합원이 제출한 예정가격, 투찰금액, 내역서 등은 조합에서 철저히 기밀유지

- 붙임 : 1. 고액보증 심사기준
2. 보증인수조건
3. 고액보증 심사대상 (예시)

붙임 1

고액보증 심사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심사기준 및 배점																	
신용평가 (60점)	신용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합신용등급</th> <th>“이크레더블”등급</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AAA</td> <td>BBB이상</td> <td>60</td> </tr> <tr> <td>AA-A</td> <td>BB, B</td> <td>55</td> </tr> <tr> <td>BBB-B</td> <td>CCC, CC</td> <td>45</td> </tr> <tr> <td>CCC이하</td> <td>C</td> <td>35</td> </tr> </tbody> </table>			조합신용등급	“이크레더블”등급	배점	AAA	BBB이상	60	AA-A	BB, B	55	BBB-B	CCC, CC	45	CCC이하	C	35
		조합신용등급	“이크레더블”등급	배점															
		AAA	BBB이상	60															
		AA-A	BB, B	55															
		BBB-B	CCC, CC	45															
CCC이하	C	35																	
※ “이크레더블”등급이 없는 경우 조합등급 적용																			
수행평가 (40점)	시공능력 평가	<table border="1"> <tbody> <tr> <td>1배 이내</td> <td>10</td> </tr> <tr> <td>1배 초과 2배 이내</td> <td>8</td> </tr> <tr> <td>2배 초과 3배 이내</td> <td>6</td> </tr> <tr> <td>3배 초과</td> <td>4</td> </tr> </tbody> </table>			1배 이내	10	1배 초과 2배 이내	8	2배 초과 3배 이내	6	3배 초과	4							
		1배 이내	10																
		1배 초과 2배 이내	8																
		2배 초과 3배 이내	6																
	3배 초과	4																	
	계약조건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2">설계변경</td> <td>유</td> <td>5</td> </tr> <tr> <td>무</td> <td>2</td> </tr> </tbody> </table>			설계변경	유	5	무	2										
		설계변경	유	5															
			무	2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2">물가상승</td> <td>유</td> <td>5</td> </tr> <tr> <td>무</td> <td>2</td> </tr> </tbody> </table>			물가상승	유	5	무	2										
	물가상승	유	5																
		무	2																
	자재비 적정성	<table border="1"> <tbody> <tr> <td>적 정</td> <td>10</td> </tr> <tr> <td>부족의심</td> <td>5</td> </tr> <tr> <td>부 족</td> <td>1</td> </tr> <tr> <td>내역서 미제출</td> <td>0</td> </tr> </tbody> </table>			적 정	10	부족의심	5	부 족	1	내역서 미제출	0							
적 정		10																	
부족의심		5																	
부 족		1																	
내역서 미제출	0																		
노무비 적정성	<table border="1"> <tbody> <tr> <td>적 정</td> <td>10</td> </tr> <tr> <td>부족의심</td> <td>5</td> </tr> <tr> <td>부 족</td> <td>1</td> </tr> <tr> <td>내역서 미제출</td> <td>0</td> </tr> </tbody> </table>			적 정	10	부족의심	5	부 족	1	내역서 미제출	0								
	적 정	10																	
	부족의심	5																	
	부 족	1																	
내역서 미제출	0																		
계		100																	

붙임 2

보증인수조건

○ 산출된 평점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구분

심사등급	산 출 점 수	보증인수조건(선택)	
		물적 담보	인적 담보
1등급	85점 이상	면 제	면 제
2등급	85점 미만 ~ 75점 이상	보증금액의 10%	조합원 1인 이상 또는 자연인 1인 이상
3등급	75점 미만 ~ 60점 이상	보증금액의 20%	
4등급	60점 미만 ~ 50점 이상	보증금액의 30%	
5등급	50점 미만	보증금액의 40%	

※ 참고 사항

- 조합원 입보한도 : 출자지분액 범위내

다만, 지분액이 5억원에 미달시 5억원까지

- 자연인 입보자격 및 한도

-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임직원 또는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등
- 입보한도는 1인당 3억원 범위내

붙임 3

고액 보증 심사 대상 (예시)

(보증금액 기준)-VAT 포함

예시 ①

구 분	최초 발급	1차 증액	2차 증액	합 계
보증금액	4 억원	3 억원	6 억원	13 억원
대상 여부	심사 대상 아님 (5 억원 이하)	심사 대상 아님 (5 억원 이하)	고액 심사대상 (5 억원 초과)	※ 2차 증액건만 심사 대상

예시 ②

구 분	최초 발급	1차 증액	2차 증액	합 계
보증금액	6 억원	2 억원	6 억원	14 억원
대상 여부	고액 심사대상 (5 억원 초과)	심사생략 (단, 최초 심사등급 적용)	심사생략 (단, 최초 심사등급 적용)	※ 최초 발급건이 심 사대상이고 이후건 은 심사없이 심사등 급만 적용

예시 ③

구 분	최초 발급	1차 증액	2차 증액	합 계
보증금액	4 억원	2 억원	3 억원	9 억원
대상 여부	심사 대상 아님 (5 억원 이하)	심사 대상 아님 (5 억원 이하)	심사 대상 아님 (5 억원 이하)	※ 3건 모두 심사대상 아님

예시 ④

구 분	최초 발급	1차 증액	2차 증액	합 계
보증금액	4 억원	6 억원	5 억원	15 억원
대상 여부	심사 대상 아님 (5 억원 이하)	고액 심사대상 (5 억원 초과)	심사생략 (단, 1차 증액 심사등급 적용)	

※ 제도 시행일(2011. 4. 1)이전 최초 발급분의 증액으로 인한 추가보증의 경우는 적용대상이나 공기업
장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조합업무 Q&A

조합업무 Q&A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업무전반에 관한 궁금사항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홈페이지(www.seolbi.com)
 Q&A 게시판과 이메일(webmaster@seolbi.com)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상호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상호 변경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관할 지점이나, 홈페이지(www.seolbi.com)에 방문하시어 <자료실 - 업무서식(96번)>에서 “출자주명부기재 사항변경신청서”를 다운받아 변동내역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구비하신 후 관할지점에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Q. 조합에서 발급한 계약보증건에 대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공제조합에서 시공상황을 조사할 법적근거나 이유가 있나요?

A.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시공상황조사는 조

합의 기본법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시공상황조사 등) 제1항 “공제조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 등)제1항 “공제조합은 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 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제조합에서 시공상황 조사를 하는 목적은 발급한 계약보증서의 공사가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조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① 보증채권자에 대하여는 보증기관으로서의 보증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② 우리조합원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원도급자인 일반 건설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한다거나, 추가공사 발생으로 추가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부당한 하도급행위에 대한 자료를 징구하여 차후 분쟁이 있을 경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조합의 시공상황조사 요청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조합 홈페이지 영업정보서비스를 이용 중 우리 회사 계약보증 잔액에서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공사의 계약보증 잔액이 남아있는데 벌써 준공된 공사인데 왜 계약보증 잔액이 소멸되지 않았는지요?

A. 계약보증의 해제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①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 ②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③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④ 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

질문의 경우와 같이 보증기간이 지나 준공처리된 공사임에도 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증내용을 확인 후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Q. 시공도중 중단된 공사의 재개로 보증기간이 연장된 경우 중단된 기간의 계약보증수수료는 면제 가능한가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당해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보증채권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속하여 3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변경(증액)없이 공사중단기간 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추가보증을 할 때에는 공사기간연장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중단일수와 공사기간연장일수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산출하여 환불 또는 추징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조합 업무부 (☎02-6240-1035) 또는 관할지점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보증에 관한 판례사례 ④

관리부 안동유 법무팀장

우리조합은 지난 2010년 12월, 건설도급계약관계시 빈번히 벌어지는 계약보증 및 하자보증 등의 법적 분쟁에 관한 중요 판례를 엮어 「판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조합원사의 보증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판례사례를 연재합니다.



주계약이 보증기간 이후로 연장된 때 변경된 기일에 채무불이행 되었을 경우 보증 책임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보증채무금】

1. 판결요지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

우에는 이로써 ○○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범위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액이

과다한지 여부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연대보증인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상의 손해배상채무는 그 발생이 불확실하고 범위 역시 불확정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거액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사람으로서의 당해 도급계약을 검토하여 채무의 발생가능성과 그 범위를 미리 예측한 바탕 위에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경우 그 도급계약에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장치는 일종의 담보적 기능을 하는 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은 그 장치가 도급계약상의 취지대로 가

동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예후를 가늠하게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장치는 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도급인에게만 이를 가동할 권한이 있을 뿐 연대보증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상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도급인으로서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상의 각종 장치가 그 취지대로 가동되도록 적절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장치의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보증인 등의 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민법 제485조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항, 상법 제664조 / [2]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30조 / [3]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664조 / [4]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428조, 제485조, 제664조

2. 판결내용

【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

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범위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액이 과도한지 여부는 주채무자인 공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연대보증인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4]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상의 각종 장치를 적절히 가동하여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장치의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감면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공2001상, 645),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공2001상, 94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공2001하, 1846) / [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공

1999상, 32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공1999상, 754) / [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345 판결(공1992, 1847)

3. 판례 해설

그 동안 계약보증에 있어서 기간과 채무 불이행의 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 판례는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적으로 법적 의미를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판례는

첫째, 보증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중 이행 불능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 있는 것으로 보고

둘째, 보증 기간 지나서 이행 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가

나중에 판결을 통해 보증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의 완성이 되지 않으면 이행지체로 보고 채무 불이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사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행불능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으로 보았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은 것이었다.

문제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증 기간이 연장된 것에 관하여는 사례가 없었는데 이 판결은 보증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보고 보증 기간 연장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보증의 효력은 당초의 기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보증 기간 경과 후의 보증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보았다. 📌